

광주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521013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울

담당변호사 강신중, 김진

변론 종결2024. 11. 13.

판결 선고2024.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6.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7. 7. 14.부터 2020. 5. 15.경까지 C에게 대여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 이상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17. 11. 23.부터 2021. 10. 6.까지 C로부터 합계 5억 3,000만 원을 변제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2) 원고의 C에 대한 위 지급액 중 2020. 4. 22.자 금원 4억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한 직후, D의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4억 원이 이체되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피고는 2021. 10. 6.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본인(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12,000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C는 원고의 4억 원에 대한 채무자인바, 피고는 피고 소유인 위 주식 12,000주를 담보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1. 10. 25.까지 4억 원을 이유 없이 지급하되, 만약 피고가 위 기간까지 원고에게 4억 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채권자 원고가 위 주식 전부를 양수받아 타에 임의처분하더라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 C와 F의 확인각서 작성 등

1) 이후 원고가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2022. 2. 16. C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위 형사고소 사건을 '이 사건 형사고소 사건'이라 한다), C와 C의 동업자인 F은 2022.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청주시 G 공동약정에 기한 C와 F의 각 지분 범위 내에서 사업 정산 시 또는 2022. 11. 10.까지 연대하여 7억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C는 2023. 3. 4. 원고에게 'C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에게 14억 원의 금전 피해를 주었으며, 원고의 고소로 법원 영장실질심사 중 F과 14억 원 중 7억 원만 갚기로 합의하고, 2022. 11. 10.까지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고, 2023. 4. 30.까지 3억 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2023. 6. 30.까지 갚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22, 24 내지 2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원고의 C에 대하여 채권액이 합계 14억 1,000만 원(= 2017. 7. 14.~2020. 5. 15. 원고의 C에 대한 지급금 합계 19억 4,000만 원 - 2017. 11. 23.~2021. 10. 6. 변제금 5억 3,000만 원)이고, 피고가 C의 위 채무 중 4억 원을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C가 2022. 2월경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7억 3,000만 원인 사실, C가 원고에게 2022. 2. 22. 7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23. 3. 4. 위 확인각서 상의 7억 원의 미변제를 인정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무렵인 2021. 10. 6.경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적어도 7억 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C의 채무 중 4억 원을 연대보증하며 위 금액을 2021. 10. 2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C의 채무 중 4억 원 및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10.

26.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4. 22.부터 2021. 10.

25.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지불각서 상 피고가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일이 2021. 10. 25.이고, 위 지급기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식 양도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E 주식 12,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위 주식의 양도가액 1억 2,0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하면 피고가 보유하는 E의 주식을 담보로 4억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E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음이 문언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와 E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대물변제 명목으로 E 주식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물변제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로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이행인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 중 합계 4,000만 원(= 2020. 12. 10.자 2,000만 원 + 2020. 12. 15.자 1,000만 원 + 2021. 1. 6.자 1,000만 원)을 C가 원고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가 피고가 주장의 위 각 자기앞수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자기앞수표가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교부일자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그때까지의 변제금을 모두 반영하여 위 지불각서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 중 1억 원을 C가 2021. 10. 6. 원고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를 C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는 것이고,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4017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인 C의 이 부분 변제액은 채무 전액에 미달하므로 위 일부 변제가 C의 채무 전액을 대상으로 변제충당된다 보아야 하고, C가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이후로도 원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 등을 작성하여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변제금액을 반영한 주채무자 C의 채무액이 7억 원에 달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라 C의 위 채무액 중 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 중 5,000만 원을 F이 2021. 10. 6. 원고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F이 위 일자경 원고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 중 합계 1억 5,000만 원(= 2023. 10. 16.자 5,000만 원 + 2023. 10. 27.자 1억 원)을 F이 원고의 처인 H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인 H 명의의 계좌로

2023. 10. 16. 5,000만 원, 2023. 10. 27. 1억 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H 명의의 위 계좌에 송금명의인으로 'F'이 기재되어 있고, F은 C와 연대하여 7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등 피고와 별개로 C의 채무 중 7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바 있으므로, 위 송금액은 F이 부담하는 7억 원의 채무에 변제충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F이 C와 연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이 5억 5,000만 원(= 7억 원 - 1억 5,000만 원)이 남게 되는바, 그 채무액이 피고가 보증한 금액인 4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는 보증한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며, 달리 이 부분 변제액이 피고의 보증채무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무 중 합계 3,000만 원(= 2024. 2. 6.자 2,000만 원 + 2024. 2. 22.자 1,000만 원)을 C가 원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가 주식회사 I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24. 2. 6. 2,000만 원, 2024. 2. 22.자 1,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송금액은 C가 부담하는 채무에 변제충당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고려하지 않고 원금에 충당하더라도 C가 부담하는 채무액이 6억 7,000만 원(= C가 2023. 3. 4. 지급하기로 한 채무액 7억 원 - 이 부분 변제액 3,000만 원)이 남게 되는바, 그 채무액이 피고가 보증한 금액인 4억 원을 초과하며, 달리 이 부분 변제액이 피고의 보증채무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김혜선